

기 획 위 원 회 규 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기획처장이 겸임한다.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본교의 발전을 위한 계획안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사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행정발전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18.05.29.)
4. 기구의 설치·조정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8.05.29.)
6. (삭제 2018.05.29.)
7. (삭제 2018.05.29.)
8. (삭제 2018.05.29.)
9. 기타 본교 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제5조(소집과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간사가 관리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제8조(사무) ①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원을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사무지원은 기획처에서 주관한다.

제9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6-1-3~2 제6편 위원회

이 규정은 2018년 05월 29일부터 시행한다.